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장(생활디자인심사과)

35208

◆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14.1.1.)되지만 특허청에 등록된 지번주소가  
주소정보 부족으로 일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지번주소로 관리되고 있는 주소정보는 출원인정보변경 절차를  
통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2244122141 2020년 11월 11일 제작 대전둔산



보통등기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42-2(수곡동) 골든벨 40호

강병훈  
28693

발송번호: 9-5-2020-077801786  
 발송일자: 2020.11.09.  
 제출기일: 2021.01.09.

수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42-2(수곡  
 동)골든밸 40호  
 강병훈 귀하(귀중)

28693

##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

출 원 인 성 명      강병훈 (특허고객번호: 420200073275)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북로35번길 19, 402호 (부평동,  
 보령빌라)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출 원 번 호           30-2020-000523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책상용 칸막이

1.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서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디자인보호법 제62조)

- \* 의견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용
- \* 보정서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용

2.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거 절 이 유

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은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1디자인에 1출원이 아닙니다.

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 까지 의견(답변,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업상 이용가능성 : 구체적이지 않아 공업상 이용가능성 없는 출원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 출원 디자인은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내용으로부터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출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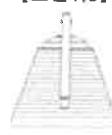
가. [디자인의 설명]이 불충분하여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상태, 재질과 크기가 불명확하므로 아래를 참고하여 각 부분별 설명을 규정에 맞게 기재하는 보정을 요합니다.

- (1) [디자인의 설명] 1번 항목에 기재한 “재질”은 “목재, 플라스틱재”등 과 같이 특정한 재질의 지정을 요합니다.
- (2) 물품의 크기와 형상은 하나의 디자인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디자인의 설명] 2번 항목과 3번 항목의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은 부적합하므로 삭제를 요합니다.
- (3) [디자인의 설명] 4번 항목과 5번 항목에 기재한 내용은 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를 요합니다.
- (4)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임의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설명] 7번 항목에 기재한 “책상에 해당하는 것은 설명을 위한 것이고 칸막이만을 특허에 포함하도록 한다”내용은 부적합하여 삭제를 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해당 설명에 기재된 “특허”는 이 출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합합니다.
- (5) [디자인의 설명]에 도면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정을 요합니다.

<p>※ 참고: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관련 별표 2)</p> <p>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 중 [디자인의 설명]란에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대상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재질 등에 관한 설명)</p> <p>(작성예시) *예시이므로 임의로 정정이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질은 목재 및 플라스틱재임.</li> <li>2. 이 디자인은 회의용 책상의 상부에 설치하여 개인석과 단체석을 경계하는 용도이며,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있음.</li> <li>3.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1.4는 디자인의 원쪽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1.7은 디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면임.</li> </ol>
--

나. 제출된 [도면 1.1] 만으로는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도면을 추가하여 디자인의 형상을 명확히 하는 보정을 요합니다. 다만,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요지변경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도면 예시						
【도면 1.1】 전체적인 형태	【도면 1.2】 정면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4】 좌측면도	【도면 1.5】 우측면도	【도면 1.6】 평면도	【도면 1.7】 저면도	
							

※ 참고: 도면 작성방법 안내

-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1】, 【도면 1.2】... 순으로 적습니다.
-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문)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1.4는 디자인의 원쪽면을, 도면 1.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1.7은 디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 2항, 3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의 용도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 참고도면을 【참고도면】란에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문) 참고도면 1.1은 이 물품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 주의 : 도면의 보정에 있어 아래의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의 도면 등에 표현된 형상·모양이나 색채상의 부가, 삭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그 부가, 삭감, 변경 등이 외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정도의 것은 예외로 함.
- 도면 중 불일치한 일면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 도면에는 형상만이 그려지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색구분 또는 색호림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그 설명과 같이 도면을 보정한 것이 통상 그 물품으로서 실시되는 정도의 상식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적힌 디자인의 수에 맞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예) 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첨부된 출원에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도면을 보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최초 출원 시 제출된 도면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할 경우.
- 첨부도면으로 추측하여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디자인의 설명을 보정하는 경우.

다. 제출된 【도면 1.1】은 “책상용 칸막이”가 책상에 설치된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 사용상태도를 나타내는 참고도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정을 통해 【참고도면 1.1】 등으로 식별항목의 변경을 요합니다. 또한, 책상의 일부가 잘려서 물품의 형상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보정을 요합니다.

## 2. 1디자인 : 2 이상의 디자인을 표현한 출원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

이 출원 디자인은 2 이상의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출원 디자인에서 1개의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디자인을 각각 새로운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이 출원 디자인에서 일부 디자인을 삭제하여 1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 이 출원디자인은 하나의 도면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디자인이 도시되었으며, 동적디자인 또한 아니므로 1개의 디자인으로 명확히 하는 보정을 요합니다.

### [안내사항]

- 이 출원디자인의 형상 및 모양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도면 보정후 신규성 판단 및 용이창작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출원디자인은 최초 출원된 디자인의 도면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보정을 통해 도면을 추가하여도 최초의 디자인과 동일성을 극복할 수 없고 요지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되어도 상기의 거절이유는 극복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불가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끝.

2020.11.09.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생활디자인심사과

심사관 박천희

박천희

박천희

1. 도면의 보정서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매건 4,000원, 서면은 매건 14,000원의 보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보정료는 보정서 제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등록료·수수료·등록세·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의 납부자번호란에 기재하여 납부하며,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토요휴무일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보정료는 국고수납은행(대부분의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정료에 상응하는 통상환(우편환)을 동봉하여 제출하면 특허청에서 대신 납부해드립니다.
  4. 이 통지서에서 인용된 선디자인등록출원(출원공개건) 또는 선등록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파일 또는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로, 이 통지서 결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 042-481-5364(담당심사관 박천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공직비리신고센터(특허청-민원/참여-국민신고-공직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출력 일자 : 2020/11/9



## 특 허 청

# 출원(등록명의)인 주소변경신고 안내

1. 귀하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귀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의하여, 등록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주소는 귀하가 직접 신고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만약 귀하가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후 귀하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귀하의 변경된 주소로 통지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가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의하여 귀하에게 발송된 서류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공시송달에 의거 통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 [등록명의인표시 통합관리 신청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명의인 표시를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따라 변경(경정)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 서식은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며 이후의 신청시에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만을 제출함으로써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 변경(경정)'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행하는 것으로 송달할 서류를 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특허청 공보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최초 공시송달은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공시송달 안내 : 특허청 Home-page ( <http://www.kipo.go.kr> )

특허청 공보 CD

2020.11.09

## 특 허 청